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목 차

I. 목적	1
II. 기본 방침	1
III. 지원 자격	3
IV.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5
V. 입학전형 공통 유의사항	6
VI. 전기고등학교 전형	8
VII. 후기고등학교 전형	11
VIII. 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20
IX. 북한이탈주민 특별 전형(정원 외)	22
X. 타 사도(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 전입자 입학전 전입 관리	22
XI.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의 유의사항	23
[붙임1]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표	24
[붙임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25
[붙임3]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계열현황	26
XII. 2025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30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I 목적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합리성, 공정성, 타당성을 제고한다.

II 기본 방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4156호, 2024. 1. 23.) 제76조의3~제92조에 따라 시행한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전형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으로 구분하고, 평준화지역 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일반고등학교¹⁾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며, 그 외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등 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전형시기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는 전기 모집 전형 기간에 신입생을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각호의 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후기 모집 전형 기간에 신입생을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모집 시기	대상학교 및 학과계열
전기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
후기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 평준화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3개 시 지역을 말하며, 군산시와 익산시는 '동' 단위 지역에 한정하고(단, 군산중앙고 포함) '읍, 면' 단위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의 장이 전형을 실시함

- 특수목적고등학교(전북과학고, 전북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상산고), 일반고등학교 중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서울 이외 방식)으로 선발한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이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제1항).
4. 교육감이 실시하는 전형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39개교(전주 23개교, 군산 8개교, 익산 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군별 합격자의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한다.
 5. 전기고등학교[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또는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7항).
 -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또는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의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또는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7항, 제8항).
6. 전기고등학교[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전·후기 구분은 해당 학교의 각 계열에 의한다(<붙임1,2,3>참고).
 7. 전국의 영재학교에 지원한 자는 영재학교의 합격여부와 관련 없이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8.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형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배정 인원만큼 선발하고, 그 외의 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여 선발한다.
 9. 교육감이 승인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상산고) 및 익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별도로 의무 선발한다.
 -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서 입학정

원의 20% 이상, 의산고등학교는 일정 비율만큼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라 학교 입학정원의 1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10. 2025학년도 신입생의 선발은 정시모집,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으로 나누어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정시모집은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 전형을 실시한다.
 1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 교과 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 까지 반영한다.
 - 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고사 지필평가 성적 까지 반영한다(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지필평가(1차, 2차)와 수행평가 성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며, 후기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기준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1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승인을 얻은 후 입학전형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13.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²⁾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른다.

III 지원 자격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2) 내신성적은 「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율임

4.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³⁾

※ 위 2~5항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는 가족(보호자 포함)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졸업예정자의 지원 자격 기준일자: 전·편입학 허용일[2024. 10. 31.(목)]

- 졸업자의 지원 자격 기준일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학 원서 접수일

6.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중학교졸업학력인정자 포함)로서 모집지역이 전국단위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국단위 모집 승인을 받은 자율학교 등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8.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자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지원 희망자(지원자의 현 거주지와 관계없음)⁴⁾
 -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현황⁵⁾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전주시-제1학군, 군산시-제2학군, 익산시-제3학군(이하 '평준화지역'이라 함)]의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는 평준화지역 내 다른 학군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설치되기 전의 구 옥구군 지역과 구 익산군 지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고시 제2023-19호(2023. 10. 24.)} 제3조의 별표 2의 군산시와 익산시 지역]의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는 평준화지역 내 다른 학군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와 자율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 가능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6항

5)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나. 평준화지역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로서 입학원서 접수일 이전에 가족(보호자 포함)이 평준화지역 내의 다른 학군으로 이주하여,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에 지원하거나 출신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IV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1. 공통 추진 일정

주요내용	일 정	
○ 2025학년도 고입전형계획 수립 ·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4. 3. 31.(일)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고 입학전형실시계획 승인 신청	2024. 5. 31.(금)까지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고 입학전형실시계획 승인	2024. 8. 2.(금)까지	
○ 체육특기자 신청 접수 및 심의(문예체건강과)	신청접수: 2024. 11. 4.(월)~11. 6.(수) 심의: 2024. 11. 11.(월)~13.(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형일정(유초등특수교육과)	신청접수: 2024. 7. 1.(월)~8. 30.(금) 심의: (1차) 2024. 9. 12.(목)~9. 13.(금) (2차) 2024. 10. 11.(금), (3차) 11. 15.(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고 입학전형실시계획 공고 (입학전형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전기고 2024. 8. 5.(월)까지 후기고 2024. 9. 6.(금)까지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안내 공고 (입학전형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2024. 9. 6.(금)까지	
○ 고입전형을 위한 전·편입학 허용일	2024. 10. 31.(목)	
○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기준일	완료일
	산업수요 맞춤형고	2024. 9. 30.(월) 2024. 10. 11.(금)
	전기고	2024. 10. 31.(목) 2024. 11. 6.(수)
	후기고	2024. 12. 11.(수) 2024. 12. 13.(금)

2. 전형업무별 추진 일정: <붙임1> 참고

입학전형 공통 유의사항

1. 이중지원은 절대 금지한다. 따라서 먼저 시행한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
 - 가. 이중지원은 출신 학교장의 책임으로 절대 금지한다.
 - 나.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 고등학교의 이중지원도 금지한다.
 - 다. 전기고등학교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라.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마. 전·후기 고등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추가모집까지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수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바. 이중지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2)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 지원자가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고 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4)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5)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거나 불 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
 - 6)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다른 후기고 등학교에 지원한 경우(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불합격이 확정된 이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7)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6월 이전에 자퇴·퇴학을 하고 다른 고등 학교에 같은 학년도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8) 고등학교 합격자가 해당 학교에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⁶⁾ 및 졸업예정자가 타 시·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영재학교
 - 나. 전국단위모집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함 다만, 전북외국어고에 없는 학과가 개설된 타 시·도 외국어고 지원은 가능 하나, 지원 자격 여부는 해당 학교 2025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격에 따름
 - 다. 전국단위모집의 특성화고등학교
 - 라. 전국단위모집 승인을 받은 자율학교(반드시 해당학교의 입학전형안내 확인)
 - 마. 교육감 간의 협의에 따라 입학 지원을 승인 받은 학교
3.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
4. 추가모집 인원은 정시모집 결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입학예정자(등록 완료) 중 입학 전 타 시·도 전출로 인한 결원은 입학 후 전입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5. 입학원서 작성 전에 학부모와 상담하고, 작성 완료된 원서 출력본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 날인을 받는다.
6. 확인 날인이 완료된 원서는 학급별로 묶어 해당 연도 입학전형 등록마감일까지 보관하고, 이에 의한 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7.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되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매뉴얼에 따르며, 교육감은 전형 완료 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 입학전형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 입학전형을 개선하도록 조치 한다.
8. 전·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연도 고등학교에 신입학 할 수 없다(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지원 불가).
9.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학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원서접수일 이전 고등학교를 자퇴·퇴학한 자는 지원할 수 있다.

6) 졸업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학생을 의미함

1. 기본 방향

- 가. 전기고등학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88조에 따라 시행한다.
- 나.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가 해당되며, 학교별로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각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 다만,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은 금지한다.
- 다.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및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는 취업희망자, 가업승계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실시 후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등은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모집 안내에 명시하고, 모집 안내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추가모집 및 수시추가모집을 실시하고,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연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지원 방법

- 가. 지원자의 원서는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지원 고등학교에 온라인 제출한다(담임교사 인증서로 접속함).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원서를 작성한다.)
- 나.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원서 제출 전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으로 확인하여 지원한다.
- 다. 기타 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정한다.

7)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으로 원서를 작성하며, 원서제출 마감일 이후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접수된 원서가 취소될 수 있음

3. 전형 방법

- 가. 전기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1항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전기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예>

- 내신성적 100% 전형
- 내신성적 + 면접평가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 내신성적 +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평가 전형 등

- 다.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전형요소별 비율 적용,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평가 등 전형 요소의 평가방법의 구체안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이를 적용한다.
 - 학교별로 공고된 전형요소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정원 미달이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 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과학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르며,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인 필기고사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금지 한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한다.
- 마. 체육계열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 바.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특별한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합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정원에 미달한 인원의 추가모집은 전·후기고등학교 전형이 끝난 후, 반드시 추가 모집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정시모집 입학전형 실시 계획 승인 요청 시 추가모집 전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아.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예) 전형요소에 '면접'이 있는 경우(전형안내 공고 내용 포함) 정원 미달인 경우에도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 자. 입학전형에 합격한자의 미등록(등록 여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확인)
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 순위에 따라 보충하되, 해당자
명단을 결재하고 개별 통지한다.⁸⁾
- 추가합격자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 후 전입생으로 충원한다.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등록기간 마감 직후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의 일정에 따른다.
- 차. 체육특기자의 전형(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선발과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2016. 1.4.개정. 규칙 제76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의 입학범위를
허가한다.
 - 2)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 3) 전기고등학교 입학자의 선발과 배정은 고입체육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학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도내 총 입학정원의 3% 범위 내
에서 학교별 정원 내 우선 선발한다.
 - 4) 특정 학교에 우선 선발된 체육특기자는 전형일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한 후 입학전형에 응시해야 하고,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않은경
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카.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의 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523호, 2023. 10. 1.시행) 제23조(취학시킬 의무)제1항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4129호, 2024. 1. 12.시행) 제37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학교별 합격선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제4호에 해당자는 특례입학대상자로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파. 동점자 합격 사정 기준은 해당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8) 합격자 사정회 결과 보고 시, 모든 지원자의 전형 결과 성적의 석차순 명부를 함께 결재함

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의 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른다.

- 1단계: 교과 성적 점수(240점)가 높은 자
- 2단계: 출결상황 점수(30점)가 높은 자
- 3단계: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총 시간이 많은 자
- 4단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15점)가 높은 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학교별 동점자 사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형안내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VII

후기고등학교 전형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⁹⁾

가. 기본 방향

- 1) 후기고등학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88조에 따라 시행 한다.
- 2)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성적에 의하여 남녀 구분 없이 평준화 지역 학군별 입학정원만큼 선발하며, 선지원·후추첨 배정한다.
- 3)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4)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음).
- 5) 학군별 전형을 통해 선발된 배정대상자는 학군별로 지원자의 지망 순위 고교 순으로 추첨 배정한다.
- 6) 해당 연도 제 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추가모집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해당 연도 4월 말 예정).

9)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9월 중 공고 예정인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

나. 지원 방법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온라인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자의 원서는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군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원서를 작성한다.
(다만,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원서작성 불가 또는 접수된 원서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2)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군 내 모든 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3)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1지망에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하고 학군 내 일반고를 2지망부터 지망 순에 따라 지원한다.
- 4) 원서 작성 시 입학원서의 내신성적은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다.
- 5)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원서 제출 전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에서 지원자의 명단을 확인한다.

다. 전형 방법

- 1)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선발한다.
- 2) 내신성적이 평준화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학군별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 3) 석차 산출 시 총점의 동점자는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의 동점자 우선순위를 따른다.

라. 배정 방법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는 내신성적으로 학군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여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배정한다¹⁰⁾(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2) 추첨 배정방식은 합격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10) 학교별 배정인원은 합격자의 남녀별 인원을 각각 적용한 급당인원에 따라 학교별 정원이 조정됨

- 가)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하여 제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 나)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학교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제2지망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다) 위 나)의 방법으로 마지막 지망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라) 제1지망 학교의 지원자 수가 해당학교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제1지망 추첨에서 배정 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한다.
- 마) 위 라)의 방법에도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정원은 제2지망 추첨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제3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바) 위 마)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3)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배정하는 경우는 남녀별로 구분한 추가 합격 후보자 명단의 순위에 따라서 미등록자가 있는 학교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추첨 배정한다.
- 4) 다음의 조건에 있는 학생은 해당 조건의 심의 또는 확인 과정을 거쳐 선배정할 수 있다.
- 가) 체육특기자(정원 내)
-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선발과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2016.1.4.개정. 규칙 제76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의 입학 범위를 허가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학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 ②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 ③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배정은 교육감이 도내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 ④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자의 선발과 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자를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학생 본인에게 통보 한다.

④ 입학전형원서를 제출한 체육특기자 중,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선발된 자에 한하여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수급계획과 본인의 희망 학교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에서 선배정한다.

나)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의 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523호, 2023. 10. 1. 시행) 제23조(취학시킬 의무)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4129호, 2024. 1. 12. 시행) 제37조(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에 따라 평준화지역 학군별 합격선에 관계없이 해당 학군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여, 일반 학생과 별도로 지원자의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하되, 별도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인원을 균형 있게 배정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에 관한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함
- 고입전형과 관련하여 일반학생의 원서제출 및 전형과 별도로 진행됨
(※ 고입전형을 위한 학교 지원 및 원서제출을 하지 않음)

라)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정원 내)

평준화지역 학군별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 제출 시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배정받은 고등학교를 1지망에 작성하여 제출 하면, 고입선발에 합격한 자에 한해 추첨에 의하지 않고, 1지망 고교에 정원 내로 선배정한다. 다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외 지역 중학교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3-19호(2023. 10. 24.)}] 출신 및 다른 학군 출신 지원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의 판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공고 시 안내하고 시행일정, 절차, 방법은 학군별 교육지원청의 계획 및 공고에 의한다.

마) 다자녀대상자(정원 내)

한 가정 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전주(혁신도시 포함)/군산/의산] 내에 거주¹¹⁾하는 경우 다자녀대상자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근거리 선배정 조건에 해당되는 다자녀대상자는 한 가정의 자녀가 2024. 10. 31.(목) 기준으로 영유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 재학생 포함하여 3명 이상이고, 지원자의 거주지와 재학 중학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 내에 있어야 한다.
- 다자녀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 선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받고, 지원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받는다.¹²⁾
- 다만, 2024. 10. 31.(목) 기준 고3 재학생 이상은 다자녀대상자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자녀대상자로 선배정 판정받은 지원자가 배정받은 근거리 고교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다자녀대상자 선배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선배정 대상자(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및 히귀병 질환자, 다자녀대상자)로 선정된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일반고 선배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쌍생아(다생아) 중 동일교 배정 희망자(정원 내)

쌍생아가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쌍생아 중 대표 1인을 대상으로 일반학생과 함께 추첨 배정하며, 타 자녀는 대표 1인이 배정된 학교에 배정한다(다만, 남녀쌍생아는 남녀공학으로 배정함).

- 이는 쌍생아가 모두 고입선발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되며,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만약 2인 이상의 쌍생아(다생아)인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의 숫자에 대해서만 적용함).¹³⁾

11) 거주지(주민등록등본)는 지원자와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자의 형제자매는 거주지가 전북 도내인 경우에 해당됨

12) 다자녀대상자 근거리 선배정과 관련한 절차, 방법, 적용 등은 2025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 요강의 세부 시행 계획에 따름

13) '대표 1인'은 한 가정 내 쌍생아 중 동일교 배정을 원하는 쌍생아의 원서작성 시 '대표 1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대표 1인'은 맏이가 아니어도 됨

- ※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가 포함된 쌍생아 동일교 배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5) 특례입학대상자의 전형은 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6) 추첨 배정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배정하기 위해 가해자를 배정된 지망 순위의 차순위 학교로 재배정(정원 외)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근거).
 -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일부 재배정 조정안(2012. 8. 22.)에 따름

2.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

가. 기본 방향

- 1)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1항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3)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 4)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중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후기 전형일정에 따르고, 입학정원 전체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¹⁴⁾
 -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르며, 교육감이 승인한 전형안내에 따라 실시한다.
- 5)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추가모집 및 수시추가모집을 실시하고,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연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6)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7)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를 동시 지원

14) 후기 일반고등학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후기고 정시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없음(정시모집 종료 후 추가모집에 지원해야 함)

할 수 있으나,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는 동시 지원할 수 없다.

나. 지원 방법

- 1) 지원자의 원서는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지원 고등학교에 온라인 제출한다.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작성한다.¹⁵⁾
- 2)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원서 제출 전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으로 확인하여 지원한다.
- 3) 기타 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 전형 방법

- 1)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입학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거나 내신성적 100% 적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3)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
- 4) 내신성적으로만 전형을 시행하는 경우, 내신성적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른다.
- 5) 동점자 합격 사정은 전기고등학교 전형 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 6) 정원에 미달한 인원의 추가모집은 반드시 추가모집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7)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8)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미등록(등록 여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확인)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 순위에 따라 보충하되, 해당자 명단을 결재하고 개별 통지한다.¹⁶⁾
 - 추가합격자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 후 전입생으로 충원한다.
- 9)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전기고등학교 전형 계획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시스템으로 원서를 작성하며, 원서제출 마감일 이후라도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접수된 원서가 취소될 수 있음

16) 합격자 사정회 결과 보고 시, 모든 지원자의 전형 결과 성적의 석차순 명부를 함께 결재함

3.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가. 기본 방향

- 1) 외국어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입학전형안내에 따라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 한다.
- 3)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4)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추가모집 및 수시추가모집을 실시하고,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연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5)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는 동시 지원할 수 없다.

나. 지원 방법

- 1) 지원자의 원서는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지원 고등학교에 온라인 제출한다.
※ 상산고는 별도 원서작성 시스템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다.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작성한다.¹⁷⁾
- 2)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의 진위 확인은 입학원서 제출 후 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각 학교에서 해당 보훈지청에 확인한다.
- 3) 기타 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정한다.

17)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원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으로 원서를 작성하며, 원서제출 마감일 이후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접수된 원서가 취소될 수 있음

다. 전형 방법

- 1) 입학전형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전형요소의 평가방법 구체안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이를 적용한다.
 - 학교별로 공고된 전형요소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정원 미달이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 3) 외국어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르며, 필기고사 또는 교과 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방법을 금지한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한다.
- 4)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인 경우는 특별한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합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인원의 추가모집은 반드시 추가모집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5)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처리하며, 동점자 합격자 사정은 해당 학교의 동점자 사정 기준에 따른다.
- 6)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 7) 입학전형에 합격한자의 미등록(등록 여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확인)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 순위에 따라 보충하되, 해당자 명단을 결재하고 개별 통지한다.¹⁸⁾
 - 추가합격자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 후 전입생으로 충원 한다.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등록기간 마감 직후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의 일정에 따른다.
- 8)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전기 고등학교 전형 계획에 준하여 시행한다.

18) 합격자 사정회 결과 보고 시, 모든 지원자의 전형 결과 성적의 석차순 명부를 함께 결재함

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1. 대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격 요건			비고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 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 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 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학력인정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자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 위의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4항).
- 학교장 전형고의 경우는 이에 준하여 학칙 및 입학 전형에 따라 시행함

2. 전형 방법

가. 특례입학대상자는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수탁연구자료 2023-102)」,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학교별 학칙 및 입학전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

나. 지원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한다.

※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일반고)

가) 제1호, 제4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제2호, 제3호: 출신 중학교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 선발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학교별 모집 정원의 2%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일반고): 학교별 모집 정원의 2%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한다(전산추첨).

라.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을 협용하지 않는다.

※ 특례입학 세부 시행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

1.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2. 대상학교: 특성화고 전문계열 및 일반고 전문계열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전형방법

- 학교별 입학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하고, 해당 고등학교는 제출서류의 확인과 심사를 거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비치한다.

4.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정원 외)에 지원한 사람은 정원 외 특례입학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타 시·도 고등학교 합격(배정)자의 가족(보호자 포함)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 전 배정할 수 있다.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타 시·도 전입자 입학 전 배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¹⁹⁾
3.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경우 「비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4. 타 시·도 전입자의 입학 전 배정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의 타 시·도 전입자에 준해서 처리한다.

19)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전형일정은 합격 후 학교 배정, 등록까지 포함하며, 타 시·도 전입자 입학 전 배정 별도 계획은 다음 연도 1월 중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임

XI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의 유의사항

1. 전형 관리

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와 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전형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가. 정확한 전형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안내를 기준으로 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엄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전형 관리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법규와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자체에서 보완하여 시행한다.

마. 입학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학교도 전형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

바. 입학성적 관리

1)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장을 위원장으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업무 개시 전에 입학전형 관계자(전형위원, 집계위원, 사정위원, 내신성적 관리자, 고입전형포털시스템 운영자 등)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관계자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학전형 관계자에게 외출금지 및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조치하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출입자의 감시를 위한 경비 대책과 전화사용 통제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보안일지를 비치하여 기록·확인한다.

사. 전형 시행 관련 기타 유의사항

1) 입학전형에 참여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²⁰⁾

2) 입학전형 중 면접 및 실기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의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3)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교는 안내된 별도 수당지급 한도액을 준수한다.

2. 전형관련 학교에 보관해야 할 문서

가. 입학전형안내를 기준으로 한 세부 추진계획

나. 내신 성적 출력본

다. 서약서첩

라. 원서 접수 대장 출력본

마. 업무담당표

바. 기타 전형 관계 서류첩

20) 상산고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학교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불임 1 >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전기고			후기고		
학교유형 전형일정	특수목적고(4개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4개교]	특수목적고(3개교) 특성화고(전문24개교, 대안4개교) 일반고(전문3개교, 예체3개교) [37개교]		특수목적고(1개교) 자율형사립고(1개교) [2개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개교]	평준화 일반고 [39개교]
내신산출기준일	'24. 9. 30.(월)			'24. 10. 31.(목)		
내신산출완료일	'24. 10. 11.(금)			'24. 11. 6.(수)		
원서교부·접수	'24.10.14.(월)-10.17.(목) 17:00까지	'24.11.7.(목)- 11.8.(금) 17:00까지	'24.11.20.(수)- 11.22.(금) 17:00까지	상산고: 2024.12.5.(목)-12.10.(화) 외국어고: 2024.12.13.(금)-12.17.(화) 일반고: 2024.12.18.(수)-12.20.(금)		
전형기간 (전형일)	'24.10.23.(수)-10.25.(금)	특별 전형 제일 제일	'24.11.11.(월)	'24.11.25.(월)- 11.27.(수)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24.12.9.(월)-'25.1.13.(금)	
합격자 발표	'24.11.1.(금) 10:00	'24.11.13.(수) 10:00	'24.11.28.(목) 10:00	학교별 일정	(비) '25.1.3.(금) 10:00 (평) '25.1.10.(금) 10:00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5.1.17.(금) 14:00
등록기간	2025. 1. 20.(월)-1. 22.(수)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5. 2. 3.(월)-2. 4.(화) 17:00				
	전형일	2025. 2. 6.(목)-2. 7.(금)				
	합격자발표	2025. 2. 12.(수) 10:00				
	등록기간	2025. 2. 17.(월)-2. 18.(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5. 2. 19.(수)-2025. 5. 23.(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9월부터 / * 평준화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3) 전북과학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특성화고(28) -전문계열(24)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공고, 전주상업정보고, 완산 여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원광보건고, 진경여고, 정 읍제일고, 칠보고, 글로벌학산고, 남원용성고, 남원 제일고, 덕암정보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게임과학 고, 한국한방고, 한국기술부사관고, 전북유니텍고, 전북펫고, 한국치즈과학고, 강호랑공고, 전북베이 커리고, 출포자동차공고 -대안계열(4) 고산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선고 일반고 전문계열(3) 한국전통문화고, 함열여고, 영선고 일반고 예체계열(3) 한국전통문화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 밀줄: 2개 전형 실시 고교	특수목적고(1) 전북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1) 상산고	o 평준화고(39) 전주(23): 전북사대부고, 양현고, 전 라고, 전주고, 전주슬내고, 전주여고, 전주제일고, 동암고, 완산고, 우석고, 유인여고, 전북여고, 전일고, 전주근 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사대부 고, 전주성심여고, 전주영생고, 전주 신흥고, 전주중앙여고, 전주한일고, 전주해성고, 호남제일고 군산(8): 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군산상일고, 군산제일고, 군산명광여 고, 군산중앙고, 군산중앙여고 익산(8): 이리고, 이리여고, 남성고, 원광고, 원광여고, 이리남성여고, 이 일여고, 전북제일고 o 비평준화고(54) 군산(1): 한들고 익산(5): 성일고, 익산고, 여산고, 함열고, 함일여고 정읍(10): 배영고, 서경여고, 신태안고, 왕산여고, 안상고, 정읍고, 정읍여고, 정주고, 태원고, 호남고 남원(5): 남원고, 남원여고, 남원서진여 고, 성원고, 인월고 김제(7): 김제고, 김제서고, 김제여 고, 금산고, 덕암고, 만경고, 만경여고 완주(2): 완주고, 한별고 진안(3): 마령고, 안천고, 진안제일고 무주(4): 무주고, 설천고, 무풍고, 안성고 장수(3): 백화고, 산서고, 장수고 임실(1): 임실고 순창(3): 순창제일고, 동계고, 순창고 고창(5): 고창고, 고창복고, 자유고, 영선고, 해리고 부안(5): 백산고, 서림고, 부안고, 부안여 고, 위도고		
전형136개교(133개교)	4개교	37개교(종복 1개교 포함)	2개교	98개교(종복 2개교 포함)		

<붙임 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합계
특수목적고	과학고	전북과학고		1	8
	외국어고	전북외국어고		1	
	예술고		전주예술고	1	
	체육고	전북체육고		1	
산업수요 맞춤형고	전북 기계 공고	군산기계공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3개교)		4	
특성화고	전문계열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상업정보고, 전주공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정읍제일고, 칠보고, 남원용성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기술부사관고, 전북유니텍고, 전북펫고, 한국치즈과학고, 줄포자동차공고, 전북베이커리고(15개교)	완산여고, 원광보건고, 진경여고, 글로벌학산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한국게임과학고, 한국한방고, 강호항공고(9개교)	24	28
	대안계열	고산고	세인고, 지평선고, 푸른꿈고(3개교)	4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상산고	1	1
일반고	일반고 전북 사대 부고	전주고, 전라고, 전주여고, 솔내고, 전주제일고, 양현고, 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군산상일고, 한들고, 이리고, 이리여고, 함열고, 여산고, 정읍고, 정읍여고, 남원고, 남원여고, 인월고, 김제고, 김제여고, 한별고, 마령고, 진안제일고, 안천고, 무주고, 무풍고, 설천고, 안성고, 산서고, 장수고, 임실고, 동계고, 순창제일고, 고창고, 해리고, 부안고, 서림고, 위도고(40개교)	동암고, 완산고, 우석고, 유일여고, 전북여고, 전일고, 전주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사대부고, 전주성심여고, 전주신흥고, 전주영생고, 전주중앙여고, 전주한일고, 전주해성고, 호남제일고, 군산제일고, 군산영광여고, 군산중앙고, 군산중앙여고, 남성고, 성일고, 원광고, 원광여고, 이리남성여고, 이일여고, 전북제일고, 익산고, 배영고, 서영여고, 인상고, 정주고, 태인고, 신태인고, 왕신여고, 호남고, 남원서진여고, 성원고, 동국대부속금산고, 김제서고, 덕암고, 만경고, 만경여고, 완주고, 순창고, 백화고, 자유고, 고창북고, 백산고, 부안여고(50개교)	91	96
			함열여고, 영선고(2개교)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2개교)	
계		2	63	68	133

※ (*)표시 학교는 예체계열 학교 표시

※ ()표시 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 표시

<붙임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계열현황(2024. 3. 1. 기준)

시 군 별	구분	학교명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계)	설립별	
			일반 계열	전문계열			예체 계열	과학 고	외고	예체 고	산업 수 학 중 학 교	전문계열			대안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전 주 시	평준화	전북사대부고	o														국
		양현고	o														공
		전라고	o														공
		전주고	o														공
		전주솔내고	o														공
		전주여고	o														공
		전주제일고	o														공
		동암고	o														사
		완산고	o														사
		우석고	o														사
		유일여고	o														사
		전북여고	o														사
		전일고	o														사
		전주근영여고	o														사
		전주기전여고	o														사
		전주사대부고	o														사
		전주성심여고	o														사
		전주신흥고	o														사
		전주영생고	o														사
		전주중앙여고	o														사
		전주한일고	o														사
		전주해성고	o														사
		호남제일고	o														사
		소계(23개교)	23														
	비평준화	전주공고										o					공
		전주상업정보고										o					공
		전주생명과학고										o					공
		한국전통문화고				o	o										공
		상산고													o		사
		완산여고										o					사
		소계(6개교)				1	1					1	1	2			1
전주시 계(29개교)			23			1	1					1	1	2			1
군 산 시	평준화	군산고	o														공
		군산동고	o														공
		군산여고	o														공
		군산상일고	o														공
		군산제일고	o														사
		군산영광여고	o														사
		군산중앙고	o														사
		군산중앙여고	o														사
		소계(8개교)	8														
	비평준화	군산기계공고									o						공
		군산여상고									o						공
		전북외국어고						o									공
		한들고	o														공
군산시 계(12개교)			9			1	1					1	1	1			

시 군 별	구분	학교명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계)	설립별	
			일반 계열	전문계열			예체 계열	과학 고	외고	예체 고	산업 수요 맞춤고	전문계열			대안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익 산 시	평준화	이리고	o													공	
		이리여고	o													공	
		남성고	o													사	
		원광고	o													사	
		원광여고	o													사	
		이리남성여고	o													사	
		이일여고	o													사	
		전북제일고	o													사	
		소계(8)	8														
비평준화	비평준화	전북기계공업고							o							국	
		여산고	o													공	
		이리공고								o						공	
		전북과학고						o								공	
		함열고	o													공	
		성일고	o													사	
		원광보건고								o		o				사	
		의산고	o													사	
		진경여고									o	o				사	
		함열여고	o			o										사	
		소계(10)	5			1		1		1	1	1	1	2			
익산시 계(18개교)			13			1		1		1	1	1	1	2			
정 읍 시	비평준화	정읍고	o													공	
		정읍여고	o													공	
		정읍제일고								o	o					공	
		칠보고								o						공	
		배영고	o													사	
		서영여고	o													사	
		신태인고	o													사	
		왕신여고	o													사	
		인상고	o													사	
		정주고	o													사	
		태인고	o													사	
		글로벌학산고									o	o				사	
		호남고	o													사	
정읍시 계(13개교)			10							1	2	1	1				

시 군 별	구분	학교명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계)	설립별	
			일반 계열	전문계열			예체 계열	과학 고	외고	예체 고	산업 수요 맞춤 고	전문계열			대안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남 원 시	비평준화	남원고	o													공	
		남원여고	o													공	
		남원용성고										o	o			공	
		인월고	o													공	
		한국경마축산고									o					공	
		남원국악예술고					o									사	
		남원서진여고	o													사	
		남원제일고											o			사	
		성원고	o													사	
남원시 계(9개교)			5				1			1	1	1	1	1			
김 제 시	비평준화	김제고	o													공	
		김제농생명과학고								o						공	
		김제여고	o													공	
		김제서고	o													사	
		덕암고	o													사	
		덕암정보고										o	o	o		사	
		동국대사대부설금산고	o													사	
		만경고	o													사	
		만경여고	o													사	
		지평선고											o			사	
김제시 계(10개교)			7							1		1	1	1			
완 주 군	비평준화	고산고												o		공	
		전북체육고							o							공	
		전북하이텍고									o					공	
		한별고	o													공	
		세인고												o		사	
		완주고	o													사	
		전주예술고						o								사	
		한국게임과학고									o					사	
완주군 계(8개교)			2							2		2		2			
진 안 군	비평준화	마령고	o													공	
		안천고	o													공	
		한국기술부사관고									o					공	
		진안제일고	o													공	
		한국한방고									o		o			사	
진안군 계(5개교)			3								1	1	1				
무 주 군	비평준화	무주고	o													공	
		무풍고	o													공	
		설천고	o													공	
		안성고	o													공	
		푸른꿈고											o			사	
무주군 계(5개교)			4											1			

시 군 별	구분	학교명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계)	설립별		
			일반 계열	전문계열				예체 계열	과학 고	외고	예체 고	산업 주요 맞춤고	전문계열				대안 계열	설립별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장 수 군	비평준화	산서고	0														공	
		장수고	0														공	
		전북유니텍고											0	0			공	
		백화고	0														사	
		한국마사고						0									사	
장수군 계(5개교)			3					1					1	1				
임 실 군	비평준화	전북펫고									0						공	
		임실고	0														공	
		한국치즈과학고									0						공	
임실군 계(3개교)			1								2							
순 창 군	비평준화	동계고	0														공	
		순창제일고	0														공	
		순창고	0														사	
순창군 계(3개교)			3															
고 창 군	비평준화	고창고	0														공	
		해리고	0														공	
		강호항공고										0	0				사	
		자유고	0														사	
		고창북고	0														사	
		영선고	0	0	0												사	
고창군 계(6개교)			5	1	1								1	1				
부 안 군	비평준화	부안고	0														공	
		전북베이커리고									0						공	
		서림고	0														공	
		위도고	0														공	
		줄포자동차공고									0						공	
		백산고	0														사	
		부안여고	0														사	
부안군 계(7개교)			5									1	1					
합계	평준화(39개교)	3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평준화(94개교)	54	1	1	0	2	3	1	1	2	4	8	12	7	7	4	1	
	계(133개교)	93	1	1	0	2	3	1	1	2	4	8	12	7	7	4	1	

※ 위의 고등학교 계열현황은 2025학년도 학과 및 계열변경 신청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

목적

- 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한다.
- 나. 교과·비교과 영역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여 고입전형 자료의 타당성을 높인다.
- 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및 선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2

기본방침

- 가. 내신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433호) 및 본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 나.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항목별 총점은 300점이며, 교과학습발달상황 240점(80%), 출결상황 30점(10%), 봉사활동상황 15점(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5%)을 반영한 점수를 토대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교과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202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 2) 전기고등학교 내신성적은 202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고사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한다(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제외).
 - 3) 후기고등학교 내신성적은 2024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지필평가(1차, 2차)와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2024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완료).
- 라. 본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적용한다. 다만,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특별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마.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모든 항목별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바. 내신성적 반영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비고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학년별 10점
	봉사활동상황		15점	5%	전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	5%	학년별 5점 (기본점수 3점)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3

세부 시행 지침

가.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성적)

- 1)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2) 교과 성적은 일반교과 성적을 75%, 체육·예술교과 성적을 25% 반영한다.
- 3) 교과 내신점수 환산 평점은 일반교과 성적 180점, 체육·예술교과 성적 60점으로, 240점을 만점으로 한다.
- 4) 일반교과 성적은 1-2학년과 3학년 성적을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체육·예술교과 성적은 전체 학년 성적을 통합하여 반영한다.
- 5) 일반교과 성적은 성취도와 원점수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체육·예술교과는 성취도로 산출한다.
- 6) 1-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3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1-2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7) 재취학 등의 이유로 성적 중 일부가 석차로 되어 있는 경우,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적만으로 산출한다.
- 8)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성취도 환산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예술 교과	전 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한다.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과			체육·예술교과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환산점수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환산점수
90% 이상	A	5	80% 이상	A	5
80% 이상~90% 미만	B	4	60% 이상~80% 미만	B	4
70% 이상~80% 미만	C	3	60% 미만	C	3
60% 이상~70% 미만	D	2			
60% 미만	E	1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C
- 양: D
- 가: E

※ 1-2학년의 성적 혹은 3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다.

성적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1-2학년 성적만 있는 경우	일반 교과	1-2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30$	180
	체육·예술 교과	1-2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3학년 성적만 있는 경우	일반 교과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30$	180
	체육·예술 교과	3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3학년 일반교과 성적만 있는 경우	일반 교과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40$	240

※ 위의 사항 외의 내신성적 산출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한다.

※ 내신성적 산출은 NEIS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계산된다.

나. 출결상황

1) 출결상황 산출

출결상황 산출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석일수의 산정 기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3) 점수 산출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4)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특별한 사유로 출결상황 산출이 불가능한 학년은 10점을 부여한다.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

미인정 결석일수	출결상황 점수
0일	10점
1 - 3일	9점
4 - 7일	8점
8 - 11일	7점
12 - 15일	6점
16 - 19일	5점
20일 이상	4점

다. 봉사활동상황

1)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2)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는 15점을 부여한다.

3)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부득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대상	부여기준
국내 정규학교 2024. 1. 이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 15점 부여
국내 정규학교 2022. 8. 1. 이후 (재)취학·편입자 조기졸업(예정)자	봉사활동상황 점수표 20시간 기준으로 부여
국내 정규학교 2022. 7. 31. 이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표 30시간 기준으로 부여

□ 봉사활동상황 2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20시간 이상	19	18	17	16	15	14	13	12-11	10-9	8-7	6-5	4-3	2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4) 타 시·도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의 봉사활동 시간과 전입교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내신점수를 부여한다(타 시·도의 봉사활동상황 점수 입력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5) 기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으로 한다.
 -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동아리만 해당함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점수(9점)를 부여하고, 학년 당 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 단,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예) 1학년 때 봉사상과 선행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 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예)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 ▣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은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인정함
 - ▣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 다)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예) 3학년 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항목표 (점수는 0.5점 기준) □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표 장	행동 덕목	공로상, 봉사상, 기능상, 모범상 등의 인정과 관련한 학교장 표장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실장, 학급부실장,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항목별
3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장을 받은 자	유공자 및 항목별 우수자
4	기타 학교활동	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아침독서상)	0.5점

※ 위 표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항목과 세부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4월 중에 반드시 공지해야 함

마. 내신성적 산출 방법

1) 졸업예정자

- 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점수(240점 만점), 출결상황 점수(30점 만점), 봉사활동상황 점수(15점 만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15점 만점)를 합해서 단위학교 내 학년 석차를 산출한다.
- 나) 학생 개인별 석차백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개인별 석차백분율 산출 공식

$$\text{개인별 석차백분율} = 100 \times \frac{\text{개인석차}}{\text{내신성적산출대상자수}}$$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출
- 다) 석차 산출 시 총점의 동점자는 다음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석차를

인정하되, 동석차를 산출하지 않는다.

- 1단계: 교과 성적 점수(240점)가 높은 자
- 2단계: 출결상황 점수(30점)가 높은 자
- 3단계: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총 시간이 많은 자
- 4단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15점)가 높은 자

2) 졸업생

- 가) 2001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는 해당 졸업년도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1·2·3학년의 석차백분율을 반영한다.
- 나) 2000학년도 졸업자는 2001학년도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2·3학년의 석차백분율을 반영한다.
- 다) 1999학년도 졸업자는 2000학년도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3학년의 석차백분율을 반영한다.
- 라) 1996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3학년 교과별 석차의 합과 교과별 재적수의 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text{개인별 석차백분율} = 100 \times \frac{\text{3학년에 이수한 교과별 개인석차의 총합}}{\text{3학년 교과별 재적수의 총합}}$$

- 마) 1995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3학년 성적의 학년석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text{개인별 석차백분율} = 100 \times \frac{\text{3학년 석차}}{\text{3학년 재적수}}$$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아래 공식을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점수(교과+비교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준학교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지원자의 산출총점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의 산출 점수와 가장 가까운 아래 기준치를 적용한다.

- 가) 교과 성적 산출

원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 100점	A(5점)
80점 이상 - 90점 미만	B(4점)
70점 이상 - 80점 미만	C(3점)
60점 이상 - 70점 미만	D(2점)
60점 미만	E(1점)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left(\frac{\text{시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시험과목 수}} + \frac{\text{시험과목 원점수 합}}{\text{시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40$	240

나) 비교과 성적 산출

항목	점수
출결상황	30점
봉사활동상황	15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9점
합계	54점

* 출결상황 및 봉사활동상황은 각각 30점과 15점 만점을 부여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기본점수 9점을 부여함

4) 타 시·도 출신자

타 시·도 출신 학생의 석차백분율은 출신 중학교의 내신성적(개인석차/재적수)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다만, 석차백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타 시·도 출신 학생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신성적산출 지침에 의한 산출 총점(교과+비교과 총점)을 근거로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준학교 석차백분율로 적용한다. 지원자의 산출총점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의 산출 점수와 가장 가까운 아래 기준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석차백분율만을 대응해서 취하고, 그 외의 세부 항목별 점수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자료를 사용한다.

5)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한 자는 본 지침 '3-가'의 '교과 성적 산출 공식'에 따라 적용한다.

- 교과 성적 이외의 비교과 성적 중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규정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영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소규모 중학교 학생(타 시·도 출신자 포함)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내신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기재된 학생부 등급인원 조견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소규모 중학교라 함은 중3 학생수가 내신 성적 산출일 기준으로 13명 이하를 말함).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1					1				
					50%				
2				1		1			
				1등(40%)		2등(60%)			
3			1		1		1		
			1등(30%)		2등(50%)		3등(70%)		
4			1	1		1	1		
			1등(30%)	2등(40%)		3등(60%)	4등(70%)		
5		1		1	1	1		1	
		1등(20%)		2등(40%)	3등(50%)	4등(60%)		5등(80%)	
6		1		1	2	1		1	
		1등(20%)		2등(40%)	3,4등(50%)	5등(60%)		6등(80%)	
7		1	1	1	1	1	1	1	
		1등(20%)	2등(30%)	3등(40%)	4등(50%)	5등(60%)	6등(70%)	7등(80%)	
8		1	1	1	2	1	1	1	
		1등(20%)	2등(30%)	3등(40%)	4,5등(50%)	6등(60%)	7등(70%)	8등(80%)	
9		1	1	2	1	2	1	1	
		1등(20%)	2등(30%)	3,4등(40%)	5등(50%)	6,7등(60%)	8등(70%)	9등(80%)	
10		1	1	2	2	2	1	1	
		1등(20%)	2등(30%)	3,4등(40%)	5,6등(50%)	7,8등(60%)	9등(70%)	10등(80%)	
11		1	2	1	3	1	2	1	
		1등(20%)	2,3등(30%)	4등(40%)	5,6,7등(50%)	8등(60%)	9,10등(70%)	11등(80%)	
12		1	2	2	2	2	2	1	
		1등(20%)	2,3등(30%)	4,5등(40%)	6,7등(50%)	8,9등(60%)	10,11등(70%)	12등(80%)	
13	1		2	2	3	2	2		1
	1등(10%)		2,3등(30%)	4,5등(40%)	6,7,8등(50%)	9,10등(60%)	11,12등(70%)		13등(90%)

[발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4

석차연명부 작성

- 가. 학생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서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 나. 남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를 통합하여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 다. 석차연명부 작성 시기는 아래와 같다.

석차연명부	교과 성적 반영	내신산출 기준일	내신산출 완료일
산업수요맞춤형고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2024. 9. 30.	2024. 10. 11.
전기고	3학년 2학기 1차고사 성적까지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미포함)	2024. 10. 31.	2024. 11. 5.
후기고	3학년 2학기말 성적까지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포함)	2024. 12. 11.	2024. 12. 13.

- 라. 석차연명부는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존한다.

5

내신성적 산출 유의 사항

- 가. 당해 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4월 중에 안내한다.
- 나. 고입 내신성적 반영 내용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안내하고, 내신성적통지표를 통하여 성적 산출을 확인한다.
- 다. 내신성적 산출이 완료된 후, 석차연명부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장이 결재한다.
 - 결재 후 수정 사안이 발생하면, 내신성적 산출을 수정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전자 문서(내부결재)를 남김
- 라.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한다. 다만, 이전에 산출한 고입내신 가산점 부여 대상자와 가산점 부여 제외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생략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전자문서(내부결재)로 남김].
- 마. 2025학년도 고입 일정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 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준하여 해당 학교 유형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사. 본 지침 외의 고입전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각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시행한다.